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14

발의연월일: 2021. 3. 8.

발 의 자 : 윤재옥 • 태영호 • 김희곤

최춘식 · 김승수 · 양금희

홍문표 • 정희용 • 정진석
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·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,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보육과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둔 가 정의 보육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특례를 일정기간 유지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아울러 제177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9조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20조제1호"를 "제19조, 제20조제1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	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
한 감면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	한 감면) ①
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	
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	
조에서 "유치원등"이라 한다)을	
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	
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	
를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 면제	<u>2024년 12월 31일</u>
한다.	<u>.</u>
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	2
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	
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	
한다)를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4년 12월 31일</u>
면제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	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
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	제한) ①
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	
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	
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	
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	
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	
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	

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 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(생략)
- 2.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 조제1항, 제13조제3항, 제16 조, 제17조, 제17조의2, <u>제20</u>조제1호, 제29조, 제30조제3항, 제35조의2, 제36조,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, 제50조, 제55조, 제57조의2제2항(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), 제57조의3제1항, 제62조, 제63조제2항·제4항, 제66조, 제73조, 제76조제2항, 제77조제2항, 제82조, 제84조제1항,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감면

1. (현행과 같음)
2
<u>제19</u>
<u>제19</u> <u>조, 제20조제1호</u>
조, 제20조제1호
<u>조, 제20조제1호</u>